

첨단산업아카데미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설립일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사무소 소재지		
	첨단산업 분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3. 재산목록 및 재산 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3.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업무 담당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